

서 면 답 변 서

질의의원	우강호 위원	소 속	평창군 의회
답 변 자	평 창 군 수 (도시경제과장)	일 자	질의 : 2000.12. 6 답변 : 2000.12. 7
회 의	제8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감사3일차)		

<질의요지>

○속사1리 저은저장고 운영 영농조합법인 현황

<답변요지>

당초 법인 현황

- 법 인 명 : 계방산 영농조합법인
- 주 소 :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794-1
- 이 사 : 안재업(대표이사), 김철수(감사), 김창규, 최종성
- 설립목적 : 농업경영합리화, 조합원소득증대 - 불임참조

협의각서 체결

- 협의각서체결일 : '96. 9.10
- 협 의 각 서 : 불임참조
- 체 결 자 : 평창군수 ↔ 계방산 영농조합법인

운영사항

○당초 법인이 설립되었으나 활동이 미진하여 금회 저장고를 보수 완료하면서 법인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평창군과 운영에 관한 협의 각서도 새로운 법인과 체결할 계획으로 있음

- 불 임 : 1. 당초 법인설립등기(사본) 1부.
2. 운영협의 각서 1부. 끝.

동기번호 30

목적. 본 조합 법인은 농업 경영의 합리화로 농업 생산성의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수·축산업의 경영

2.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3. 농산물 가공업체와 계약 재배사업

4.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농자재 구매 및 판매사업

6.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7. 농작업의 대행

8. 농·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9. 농산물의 규격 출하

10. 관광 농업으로 농의 소득증대

목적란 (1 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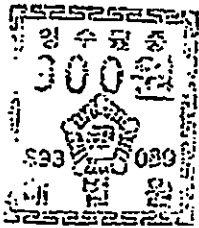
448

동기번호	30	등록번호	145071-00
기타의 사항			
1. 출자 1작의 금액 : 금 20,000원			
2. 출자의 납입방법 : 농지, 가축, 농기계 또는 현금을 이사회 에서 정하는 납입일자액 일시 납입한다.			
3. 출자액의 산정방법 : 현물 출자액의 산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4.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최고한도 총 출자 좌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출자의 총 좌수 및 납입 출자의 총액 1,500좌 금 30,000,000원			
6. 해산사유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할 경우			
2) 파산 한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기타사항란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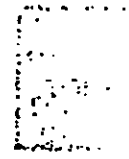


통기부 등본입




서기 1995년 6월 14일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등기공무원 양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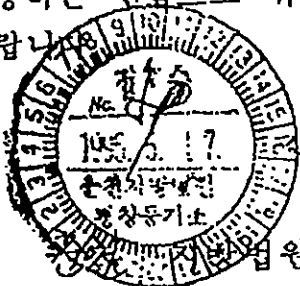


.....

인감 증명 신청

	명칭 계량산 능동조합 법인 사무소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796-1 대표이사 안 재 협
---	---

위 인감은 당 조합의 대표이사 안 재 협 이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6월 17일

신청인 계량산 능동조합법인 대표이사 안 재 협

대리인 안 광 수

평창군 용평면 평안리 796-1
평창동기소

용	부동산	매	주소				
		수	성명	주 민 등 록			
도	매도용	자	(법인명)	(등기용등록)	번	호	

위 인감은 당 조합의 비치한 인감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신청 통 수		동	수수료의 금액		원정
--------	--	---	---------	--	----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함(민법 제105조)에 준하여 등기용도 등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충청지방법원주사(법원장직))

충청지방법원
평창동기소 동기공무원

(전화번호)

양호식

평 창 군

우232-800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2 / 전화 30-2432 (0374) / 담당 임광수

문서번호 도시 13600 - 1624

시행일자 1996. 9. 5

(제 1 안)

받음 내부결재

참조

취급		군 수	
보존		조응욱	
부군수	2002		
과장	2002		
기안	임광수	도시정비계장 조응욱	협조

제목 백옥포, 속사지구 저온저장고 운영에 관한 협의각서 체결

'95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백옥포, 속사지구 저온저장고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당해 영농조합법인에게 무상영구 위탁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의각서(案)를 체결코자 합니다.

대 상	주 소	방 법	비 고
① 중부산 영농조합법인	용평면 백옥포리 175-1	공 증	100.024.111.1111
② 계방산 영농조합법인	용평면 속사리 794-1	"	

붙임 : 1) 협의각서(案) 각 1부.
2) 위임장 각 1부.
3) 재직증명서 각 1부. - 끝 -

(제 2 안)

받음 받는곳참조

제목 백옥포, 속사지구 저온저장고 운영에 관한 협의각서 체결 통보

'95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백옥포, 속사지구 저온저장고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귀 영농조합법인과 협의각서를 체결코자하니 '96. 9. 10일한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참물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대표자주민등록증

붙임 : 협의각서 각1부. - 끝 -



평 창 군 수

받는곳 : 중부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손수학, 계방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안재업

- 속사지구 저온 저장고 운영에 관한 -

협 의 각 서

갑 - 주 소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성 명 : 평 창 군 수



을 - 주 소 :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794-1번지 **계양산정농업법인**

성 명 : 대표이사 안 재 업



협 의 각 서

'95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저온저장고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당사자인 평창군수를 「갑」, 계방산 영농조합법인을 「을」이라 칭하고 「갑」이 「을」에게 본 건물 및 시설의 무상 영구위탁 관리함에 따라 「갑」과 「을」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갑」의 소유인 아래 기재한 건물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을」에게 선량한 관리자에 의무를 다하게 하므로써 건물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저함

제2조 (목적물의 표시)

- ① 목적물 소재지 :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670
- ② 면 적 (건평) : 645㎡(334.5㎡)
- ③ 구 조 : 일반 철골조(조립식)
- ④ 부속 시설물 : 전기, 기계, 기타 설비시설 각1식



제3조 (사용목적)

본 물건은 저온저장고로만 사용한다.

제4조 (승낙을 요하는 행위)

「을」은 「갑」의 승낙이 없이는 아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탁관리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양도, 전매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사용 및 동거시키는 행위
2. 물건의 변경 및 사용목적의 변경
3. 기타 인근에 피해를 야기시키는 행위
4. 물건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

제5조 (위탁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물건 멸실의 경우등)

위탁관리인과 그의 사용인이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탁 물건의 현저히 훼손,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완전하게 배상 또는 구하여야 한다(준공검사 이후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고

제6조 (불가항력에 의한 물건 멸실의 경우등)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인하여 위탁관리 물건이 멸실한 경우는 본 계약은 소멸되고 배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7조 (합의각서 이외의 신청)

본 합의각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것은 민법의 규정 및 관행에 따른다.

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2부작성, 각자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996년 9월 19일

위탁자 주소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성명 : 평창군수



관리자 주소 :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794-1번지 **계방산인동향발전회**

성명 : 대표이사 안재업



[제35호서식]

공증인 김 중 환 사무소

동부 1996년 제 2569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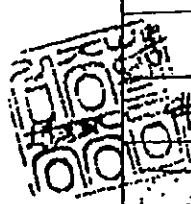
인 중

위 최 덕 각 가 _____ 에 기재된

한 평 종 근 수 김 동 옥 처의 고 제

가 불 처 양 근 영 능 조 환 인 리 대 표 자

안 해 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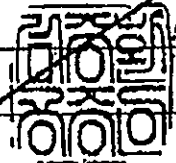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가 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직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 주선 등 추 증 에 의하여 그 사람이

몰립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1996년 9월 10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470

{제12호서식}

공증인 김 중 환 사무소

1996년 제 2469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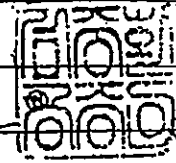
1996년 9 월 10 일

공증인 김 중 환 사무소

강릉시 교동 896-5 번지

공증인

김 중 환



[제33호서식]

공증인 김 중 환 사무소

동부 1996년 제 2570 호

인 증 서